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4일, 윤준병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일괄적으로 5년 연장하

려는 것임.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취지로, 최근 경기침체,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기후위기대응 사업 등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현재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각 지역의 생태보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해양환경은 어촌지역 어업 종사 가구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단이 수행하는 긴급방제조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익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일몰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